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「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」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사업성과를 위해 재계약하고자, 「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15조, 제16조 및 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.

2. 추진근거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, 제16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사회적경제 허브센터
- 개관일 : 2018. 5.
- 위치 : 금천구 탑골로8길 23
- 규모 : 부지 450㎡, 연면적 688.95㎡ (지상 1~4층)
- 공간구성 :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, 커뮤니티 공간, 세미나실 및 운영사무실
- 운영인력 : 4명(센터장 1, 팀장 1, 매니저 2)
- 입주기업 : 7개 기업(사무실 5, 코워킹스페이스 2석)

나. 현 운영현황

- 1) 위탁기간 : 2022. 7. 1. ~ 2023. 6. 30. (1년)
- 2) 수탁기관 :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적경제연대(이사장 : 신정희)

다. 사업예산 : 250,000천원(구비)

라. 재계약 내용

- 1) 위탁사무명 :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
- 2) 위탁기간 : 2023. 7. 1. ~ 2023. 12. 31. (6개월)

3) 수탁기관 :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적경제연대

4) 위탁업무

- 가)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
- 나) 사회적경제 지역자원 조사 및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
- 다) 사회적경제 가치확산, 지역특화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
- 라) 지역사회 연계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
- 마) 허브센터 시설 운영관리, 공유공간 대관 및 입주기업 관리

5) 선정방법 :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
마. 재계약 추진 필요성

- 1) 다년간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및 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
- 2) 재계약을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3) 2023년 8월 완료되는 『금천구 사회적경제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용역』의 결과를 바탕으로, 2024년의 사회적경제·마을공동체 중간 지원조직 통합방안과 동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, 2023년 말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6개월 연장 재계약 필요

※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기간(2023.1.1.~2023.12.31.)감안하여 연장

4. 추진일정

- 가. 2023. 3. : 구의회 상임위 안건 보고
- 나. 2023. 5. :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(재계약 적정여부 심의)
- 다. 2023. 6. : 재계약 체결

5. 관계법령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, 제16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 3

관 계 법 령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

제15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)

-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
 2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
 3. 경영, 노무, 회계, 마케팅 상담, 교육,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
 4.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
 5.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
 6.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
 7.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·자료 제공
 8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6조(위탁계약 및 기간)

-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.
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
-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-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